

본드 킷5 A제

제품안전데이터시트

1. 화학품 및 회사정보

화학품의 명칭	본드 킷5 A제(수출)
제품코드	171467Akatei_UN
공급자의 회사명칭	고니시주식회사
주소	오사카시 중양구 도소마치 1-7-1
담당부분	우라와연구소 연구개발제1부
전화번호 (오사카영업추진부)	06-6228-2994
긴급연락전화번호(야간·휴일)	090-7356-6462
추천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금속 나무, 경질플라스틱, 도자기제의 스피드 접착과 하기 재료 제품의 보수. 전화제품, 일용품의 보수. 스포츠레저용품의 수리. 소정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하 지 말 것.

2. 위험유해성 요약

GHS 분류

물리화학적 위험성	가연성액체 구분외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외 자기발열성 화학품 구분 외 물반응 가연성 화학품 구분 외 산화성액체 구분외
건강에 대한 유해성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구분2 눈에 대한 중대한 손상성 또는 眼자극성 구분2B 피부감작성 구분1 흡인성 호흡기 유해성 구분외
환경에 대한 유해성	수생 환경 급성 유해성 구분1 수생 환경 유해성 구분1 상기에서 기재가 되지 않는 위험유해성은 분류대성외이거나 분류할 수 없다.

GHS 라벨 요소

심볼

원본 1p 그림 참조

주의환기어 경고

위험유해성 정보 H315+ H320 피부자극 및 눈자극
H317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우려
H410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상당히 강한 독성

주의사항

안전대책 취급후에는 손을 잘 닦을 것.(P264)
취급후에는 눈을 잘 닦을 것.(P264)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것.(P272)
환경에 대한 방출을 피할 것.(P273)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P280)

구급조치 피부에 부착한 경우, 다량의 물과 비누로 깨끗이 닦을 것.(P302+ P352)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몇분간 주의 깊게 씻은 다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렌즈제거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 렌즈를 빼것. 그 후 세정을 계속할 것.
(P305+ P351+ P338)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P321)
피부자극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P332+ P313)
피부자극 또는 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처방을 받을 것.
(P333+ P313)
눈의 자극이 계속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P337+ P313)
오염된 의복을 벗고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탁을 할 것.(P362+ P364)
누출물은 회수 할 것.(P391)

폐기 내용물, 용기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것.(P501)

3. 조성 및 성분정보

화학물질·혼합물의 구별 혼합물

화학명 또는 일반명 에폭시수지계 접착제 주제

성분	농도 또는 농도범위	화학식	관보공시 정리번호		카스번호
			화심법	안위법	
4,4'-이소프로필렌디페놀과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중축합물 (비스페놀A형액상에폭시수지)	비공개	-	(7)-1283	-	25068-38-6

분류에 기여하는 불순물 및 안정화 첨가물 정보없음

4. 응급조치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휴식을 취할 것.

피부에 부착한 경우	<p>기분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을 할 것.</p> <p>신속하게 오염된 의류를 모두 벗고, 흐르는 물로 닦아내거나 샤워로 씻어 낼 것.</p> <p>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p> <p>바로 의사에게 연락을 할 것.</p>
눈에 들어간 경우	<p>물로 수분간 주의 깊게 닦을 것. 다음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뺄 것. 그후 세정을 계속할 것.</p> <p>바로 의사에게 연락을 할 것.</p>
마셨을 경우	<p>입을 헹굴 것. 무리하게 토하게 하지 말 것.</p> <p>바로 의사에게 연락을 할 것.</p>
응급조치를 하는 사람의 보호	구조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5. 화재시 조치

소화제	다량의 물을 방수한다. 물이 없을 때는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또는 흡을 이용한다.
특유의 소화방법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소화하고 누수방지 처치를 실시한다.
소화를 하는 사람의 보호	소화작업시 공기 호흡기를 포함해 적절한 보호복(내열성)을 착용한다.

6. 누출시 조치

인체에 대한 주의사항, 보호구 및 긴급조치	<p>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p> <p>누수장소를 환기한다.</p> <p>누수물에 닿거나 그 가운데를 걷지 않는다.</p> <p>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 (「8. 노출방지조치 및 보호조치」의 항을 참조)를 착용하고 눈, 피부에 접촉이나 흡입을 피한다.</p>
환경에 대한 주의사항	<p>환경중에 방출하지 않는다.</p> <p>하천등에 배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p> <p>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p>
봉인 및 정화방법·기재	<p>위험하지 않으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는다.</p> <p>소량의 경우, 건조흡, 모래나 불연재료를 흡수하고 혹은 덮어서 밀폐할 수 있는 공용기에 회수한다.</p> <p>대량의 경우 흡을 둘러 쌓아서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 회수한다.</p>
2차재해 방지책	<p>배수구, 하수구, 지하실 혹은 폐쇄 장소로의 유입을 막는다.</p> <p>바닥면에 남으면 모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처리한다.</p>

7.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취급	본제품은 피부장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하의 취급사항을 엄수할 것.
기술적 대책	『8.폭로방지 및 보호조치』에 기재된 국소배기, 전체환기를

한다.

안전 취급 주의사항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취급할 것.
 눈, 피부 또는 의류에 묻지 않도록 할 것.
 취급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할 것.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말 것.
 주제/경화제를 다량으로 혼합하면 발열하고 아민증기 등이 나올 수 있음.

접촉회피 『10. 안정성 및 반응성』을 참조.
위생대책 취급후에는 손을 잘 씻을 것.
보관
안전한 보관조건 특별한 기술적 대책은 필요치 않다
 『10. 안정성 및 반응성』을 참조.
 보관온도 : 2~40℃
 일광으로부터 차단할 것.
 용기를 밀폐하고 보관할 것.

안전한 용기 포장 재료 포장, 용기의 규제는 없지만 밀폐식의 파손되지 않는 것에 넣을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 조치
관리농도, 허용농도

	관리농도(후생노동성)	허용농도(산위학회)	허용농도(ACGIH)
비스페놀A형액상에폭시수지	-	-	-

설비대책 환기를 하면서 사용해 주십시오.
 본제품을 저장 또는 사용하는 설비는 안구 세정설비 및 안전샤워를 설치하는 편이 좋다.

보호구
호흡기의 보호구 정보없음.
손의 보호구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9.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외관
물리적 상태 액상
형상 페이스트상태
색 담황백색
냄새 약간있음
pH 데이터없음
융점, 初留(초류)점 및 비등범위 정보없음
인화점 276℃(-)
연소 또는 폭발범위
하한 데이터없음

상한	데이터없음
비중(밀도)	1.15±0.05g/cm ³
용해성	물에 용해되는 않음
자연발화온도	정보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경화제와 반응한다.
화학적안정성	통상조건하에서는 안정적임.
위험 유해반응 가능성	경화제이외에는 반응하기 어렵다.
피해야할 조건	데이터없음.
混觸(혼촉)위험물질	경화제류 및 산화성물질, 일반적인 混觸(혼촉)금지물질과의 혼촉을 피한다.
위험 유해한 분해 생성물	연소 등에 따라 CO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

11.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분류결과는 급성독성(경구) -구분외가 되지만, 분류할 수 없는 성분이 1%이상 5%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성독성(경구) -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경피	데이터 없기 때문에 급성독성(경피)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흡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급성독성(흡입:증기)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분진, 미스트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유해성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중독(흡입:분진, 미스트)-분류할 없다고 했다.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혼합물 성분의 피부부식성 및 피부자극성-구분2의 농도합계가 10% 이상되기 때문에 내피부부식성 및 피부자극성 - 구분2로 했다.
안구중독 손상성 및 안구자극성	혼합물 성분이 눈에 대한 안구중독 손상성 및 안구자극성 -구분2B의 농도가 10%치 이상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중대한 손상성 또는 눈자극성-구분2B로 했다.
호흡기감작성 또는 피부감작성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감작성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혼합물 성분의 피부감작성 -구분1의 농도가 컷오프치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감작성 -구분1로 했다.
생식세포변이원성	분류결과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외가 되지만 분류할 수 없는 성분이 1%이상 5%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암성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발암성 -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생식독성	분류결과는 생식독성 -구분외가 되지만 분류할 수 없는 성분이 1%이상 5%미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단회폭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정표적장기독성(단회노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표적장기독성(反復폭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정표적장기독성(단회노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흡인성 호흡기 유해성	40℃동점성율이 20.5mm ² /s보다 크기 때문에 흡인성호흡기유해성 -구분외로 했다.

12. 환경영향정보

수생환경급성 유해성(급성)	혼합물 성분의 수생환경급성 유해성 -구분1X 독성승율농도가 25%를 넘기 때문에 수생환경독성 유해성 -구분1로 했다.
수생환경만성 유해성(장기간)	혼합물 성분의 수생환경급성 유해성 -구분1X 독성승율농도가 25%를 넘기 때문에 수생환경독성 유해성 -구분1로 했다.
생태독성	정보없음.
오존층에 대한 유해성	데이터 없음

13. 폐기상의 주의

잔여폐기물	폐기시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를 것. 내용물을 다 사용했다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튀어나온 내용물의 경화·건조물은 일반 쓰레기·가연물(플라스틱·고무)로 처리한다.
오염용기 및 포장	튜브나 소용량 플라스틱 용기제품으로 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회수 또는 폐기 처리 한다. 일반쓰레기·가연물(종이류, 플라스틱·고무) 일반쓰레기·불연물(금속, 유리·도자기) 일반쓰레기·불연물(잡물)

14. 운송상의 주의

국제규제	
해상규제정보	IMO규정에 따른다.
UN NO.	3082
Proper Shipping Name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Class	9
Packing Group	III
Marine Pollutant	Applicable
Transport in bulk according to MARPOL 73/78, Annex II,m and the IBC code	Not applicable

항공규제정보	ICAO/IATA 규정에 따른다.
UN NO.	3082
Proper Shipping Name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Class	9
Packing Group	III
국내규제	
육상규제정보	소방법, 노동안전위생법, 독극물관리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규에서 정해진 운송방법에 따를 것.
해상규제정보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다.
국제운송번호	3082
품명	환경유해물질(액체)
국제운송분류	9
용기등급	III
해양오염물질	해당
MARPOL 73/78 부속서 11 및 IBC 코드에 따른 분할선적 운송되는 액체물질	비해당
항공규제정보	항공법 규제에 따른다.
국제운송번호	3082
품명	환경유해물질(액체)
국제운송분류	9
등급	III
특별안전대책	『7.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의 기재에 따를 것. 용기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도, 낙하, 손상이 없도록 쌓고 붕괴 방지를 확실히 할 것.
긴급시 응급처치 방침 번호	171

15. 적용법령

노동안전위생법	변이원성이 인정된 기준화학물질(법제57조5, 노동기준국장 통달) 명칭 등을 통지해야할 위험물 및 유기물(법 제57조의 2, 시행령 제18조의 2별표제9)
소방법	지정가연물 가연성고체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출무역관리령별표 제1의 16항
선박안전법	유해성물질(위험규칙 제3조 위험물 고시별표제1)
항공법	그 외 유해물 건(시행규칙 제194조 위험물 고시별표제1)
노동기준법	감작성을 필요로하는 것(법제7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 조 별표 제1의 2 제4호, 평8노동기준국장통달, 기발 제 182호)

16. 기타 정보

연락처	『1. 화학물질 등 및 회사정보』에 기재.
참고문헌	JIS Z 7252-2014 GHS에 근거한 화학물질등의 분류 방법 JIS Z 7253-2012 GHS에 근거한 화학품의 위험유해성정
보의 전달방법 레벨, 작업장내의	표시 및 안전데이타시트(MSDS)
기타	<p>경제산업성 사업자용 GHS분류 가이드라인(2014년 7월) 일반사단법인 일본화학공업협회 GHS대응가이드라인(2012년6월)일본케미칼 데이터 베이스(주) MSDS 작성 시스템 「로지스트」를 기준으로 작성</p> <p>위험·유해성 평가는 반드시 충분하지 않으므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이전에 전해드린 본제품의 안전데이타시트를 갖고 계산분은 폐기해 주십시오. 법 개정이나 제품의 개량에 의해 MSDS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성·개정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최신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MSDS의 전달 경로 : 제품안전데이타시트(MSDS)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로로 최종판 취급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최종 합시다만 미입수의 경우에는 MSDS 청구나 최신판 문의는 판매루트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메이커 → 대리점 → 취급사업자】</p>
전판(前版)에서의 변경점	「4. 응급조치」에 변경이 있습니다.